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재봉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049
----------	-------

발의연월일 : 2025. 11. 10.

발 의 자 : 송재봉 · 허성무 · 민병덕
박정현 · 김남근 · 임호선
강준현 · 황명선 · 이재관
이주희 · 이광희 · 서영교
이훈기 · 김우영 · 남인순
이수진 의원(16명)

제안이유

현행법은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육성,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정 등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디지털 전환 가속화, 글로벌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산업·기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디지털화 지원, 해외 판로 개척, 정책·기술 연구 기반 마련, 조직화와 안전망 강화 등 새로운 정책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화와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집적지구 전담기관 및 연구센터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연구 기반을

마련하며, 도시형소공인연합회를 설립하여 조직화와 공동사업을 촉진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도시형소공인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도시형소공인의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 나. 도시형소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2 신설).
- 다.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 라. 도시형소공인 연구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도시형소공인 관련 정책 및 기술혁신 등에 대한 연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 마.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 바. 도시형소공인연합회를 설립하여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2 등).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도시형소공인 디지털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 소공인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2. 도시형소공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
3.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
4.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장에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해외시장 진출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해외 전시회·박람회 참가 지원
2. 해외 판로·플랫폼 구축 지원
3.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번역서비스 및 법률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제18조의2 및 제1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전담기관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구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집적지구 지원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2. 지역 내 공동기반시설의 관리·운영
3. 지역 내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4. 집적지구 운영성과의 평가 및 관리
5. 그 밖에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도시형소공인 연구센터의 설치·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 관련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 및 기술혁신 지원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형소공인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연구·평가

2. 기술혁신, 표준개발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연구
 3. 도시형소공인과 관련된 국내외 시장·산업 동향 조사 및 분석
 4. 도시형소공인 지원정책 및 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수집
· 분석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연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도시형소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①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제5장을 제6장으로 한다.

제5장(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도시형소공인연합회

제22조의2(도시형소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조합 및 단체는 도시형소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도시형소공인일 것
2. 대표자가 도시형소공인일 것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도시형소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3(연합회의 사업)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시형소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2. 도시형소공인의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도시형소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6.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운영
 7.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세무·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8.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9.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4(보조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의5(지도·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연합회 정회원으로 하여금 업무나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제22조의6(행정명령)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연합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합회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장(제25조 및 제26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벌칙

제25조(벌칙) 연합회가 제22조의6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임직원 또는 청산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① 제22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도시형소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의2(도시형소공인 디지털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u> <u>1.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u> <u>2. 도시형소공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u> <u>3.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u> <u>4.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u>
<u><신 설></u>	<u>제14조의2(해외시장 진출 지원)</u> <u>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u> <u>1. 해외 전시회 · 박람회 참가 지원</u>

<신 설>

2. 해외 판로·플랫폼 구축 지원

3. 원활한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번역서비스 및 법률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2(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전담기관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집적지구의 효율적 관리와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의 집적지구 지원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2. 지역 내 공동기반시설의 관리·운영

3. 지역 내 관련 기관·단체와

<신 설>

의 협력체계 구축

4. 집적지구 운영성과의 평가
및 관리

5. 그 밖에 집적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전담기관의 지정·운영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2(도시형소공인 연구센

터의 설치·운영) ①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 관
련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 및
기술혁신 지원에 필요한 연구
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형소
공인 연구센터(이하 “연구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형소공인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연구·평가

2. 기술혁신, 표준개발 및 생산
성 향상에 관한 연구

3. 도시형소공인과 관련된 국내
외 시장·산업 동향 조사 및
분석

<신 설>

4. 도시형소공인 지원정책 및
제도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
의 수집·분석

5.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
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구
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④ 연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도시형소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①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
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
보험에 가입한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
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
라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신 설>

지원 수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고시로 정한다.

제5장 도시형소공인연합회
제22조의2(도시형소공인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 ① 다음 각 호
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조
합 및 단체는 도시형소공인연
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도시형소공인일 것

2. 대표자가 도시형소공인일 것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
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
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
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신 설>

둘 수 있다.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
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
회가 아닌 자는 도시형소공인
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3(연합회의 사업) ① 연
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도시형소공인 상호 간의 친
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2. 도시형소공인의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도시형소공인의 구매 및 판
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도시형소공인의 애로사항 해
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조사·

<신 설>

연구 및 교육사업

6.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운영

7.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세무·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8. 도시형소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9.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4(보조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22조의5(지도·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지도·감독하고, 연합회 정회원으로 하여금 업무나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제22조의6(행정명령)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

제5장 보칙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회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연합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u> <u>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합회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u>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u>제25조(벌칙) 연합회가 제22조의6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그 임직원 또는 청산인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제26조(과태료) ① 제22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도시형소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u>
---	---